



상주시의회 공고 제2023-09호

「상주시 빙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 유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 및 「상주시의회 회의규칙」 제2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3월 30일

상주시의회 의장



「상주시 빙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」 예고

1. 제안이유

가. 상주시 빙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민이 붕괴·화재·범죄 등으로부터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제2조)
나. 시장의 책무 및 빙집정비사업의 지원을 규정함(안 제3조 및 제4조)
다. 빙집정비사업의 시행방법과 빙집의 활용범위를 규정함
(안 제5조 및 제6조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4월 6일까지 상주시의회의장(참조: 상주시 의회 의회사무국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·개정 (안)	수 정 (안)	수 정 사유

나. 성명(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: 전자우편, 우편 또는 팩스

1) 전자우편: jajaja4400@korea.kr

2) 주 소: (우37183) 상주시 중앙로 111, 상주시의회

3) 팩 스: 054-535-9854 (발송 후 수신여부 확인 요망)

라. 기타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의회 의회사무국(전화: 054-537-7846)에

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입법예고와 관련된 제정안은 상주시의회

홈페이지(<https://www.sangjucouncil.go.kr> → 의회소식 → 공지사항)에

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상주시 빙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:

○ 주 소:

○ 전 화 번 호:

자치법규안 내용	의 견	비 고